

광고물법규와 디지털광고물

(2017 한국옥외광고협회)

김 정 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jesgim@hanmail.net

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근거

가. 헌법 → 법(률)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법(률), 대통령령 →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법 제16조 광고물 실명제를 표시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법 제17조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 제20조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영 제50조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광고물법의 개정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

명칭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 : 단속 대상

1990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관리 대상

2016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관리·진흥 대상

옥외광고업(자) → 옥외광고사업(자)

‘디지털광고물’의 근거 마련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 한국의 타임스스퀘어

위반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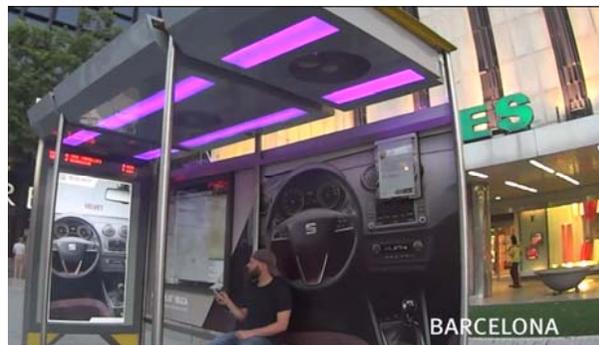
* 시·도지사의 조치, 풍수해 대비

'디지털광고물'



옥외광고의 세계적 트렌드

Interactive / Creative / Digital Signage / Innovation / Flexibility



법 개정의 세부내용

디지털광고물 (법 제2조제1호)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광고물등의 종류, 위치·장소, 규격, 표시·표출방법, 기간, 허가·신고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광고물등의 자유표시구역 (법 제4조의4)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광고특구)
- 대상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
-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 국제행사·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 조성의 경우
- 시·도지사의 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
- 개별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 시·도지사(법 제3조의2)
- 지정의 취소(행정자치부장관) : 시·도지사 요청시, 취지에 부적합한 운영시

기금조성 광고물등의 협의(허가) (법 제6조제4항)

-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은 시장등과 협의 ⇨ 허가로 간주

옥외광고발전기금 (법 제6조의2)

- 명칭 :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 시·도, 시·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적 : 광고물등의 정비,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용도 : 옥외광고산업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교육·지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 제7조)

- 명칭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심의사항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광고물의 표시·설치와 관련 영 또는 시·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강화(풍수해 대비)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법 제9조의2)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긴급 조치 (법 제10조의2)

위반 등에 대한 조치(강화) (법 제10조)

- 안전점검 결과 안전저해 우려 광고물등의 조치
- 제5조(금지광고물등) 위반 광고물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
- 시·도지사의 합동점검 및 직접 조치
 - 시·도지사의 시장등과 합동점검, 시장등에게 통보
 - 시장등은 행정명령, 행정대집행(정비), 전화번호 정지 요청 등 조치, 결과 보고
- * 시장등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조치

벌칙 대상 추가(강화) (법 제17조의3)

- 음란·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 해칠 우려의 광고물
- 제작·표시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통령령 개정

2016. 7. 7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의 분류 (영 제3조)

- 현행 17종 → 16종
-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의 정의 (법 제2조제1호)

- 법(제2조)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제2조제2항)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 : 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

광고물별 표시방법

영이 표시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광고물등 - 5종

옥상간판(영 제15조), 지주 이용 간판(영 제16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영 제17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영 제18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 제19조)

시·도 조례가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광고물등 - 11종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20조)

② 이 장(영)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물등의 표시·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함

“옥외광고물”이란 (법 제2조)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포함)

-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교통시설** :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교통수단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기선, 범선), 항공기등(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광고물, 게시시설, 광고물+게시시설 ➔ “**광고물등**” (법 제3조제1항)



디지털광고물 관련 용어의 정의

옥외광고물(법 제2조)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포함)

-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디지털광고물(영 제2조제2항)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 : 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표시방법

허가·신고 의무 (법 제3조제1항)

영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포함)

* 시장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표시방법 (법 제3조제3항)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 및 허가·신고의 기준은 영으로 정함

→ 영 제3장(제12조~제20조)

→ 영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16종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세로형),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영 제4조제1항제12호)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은 모두 허가 대상(종류·규격·위치 불문)

영 제3장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영 제8조), 기간연장(영 제10조)

- 허가·신고 표시기간(3년) 연장 :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청·신고
안전점검 대상은 안전점검
- 기간연장 허가·신고 제외 : * 2017 대통령령 개정 중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중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할 경우
 - 그 밖의 광고물등은 계속 기간연장의 허가·신고
-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2조)

- 한글표시 원칙, 외국문자 표시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한글 병기
- 형광도료, 야광도료 사용 금지
- 지면, 건물, 구조물 등에 고정, 이동 간판의 설치 금지 * 입간판은 시·도 조례로 정하면 허용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 : 3개(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입간판 1개 추가
-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함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 8종 (영 제3조의2)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전기사용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일반적 기준 * 디지털광고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영 제14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 사용, 배선 노출 금지, 전선 연결부분 피복, 「전기공사업법」에 맞는 설계·시공
- 백열등·형광등 단순조명 : 외부에 직접 노출 금지
- **전용·일반주거지역**(15m 이상 도로변은 제외),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에서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사용 금지** (의료기관·약국,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점멸·동영상 아닌 경우는 예외)
- 점멸·동영상 광고물을 차량 진행방향 정면에 표시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 이상 유지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유지
- 빛의 밝기·색깔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30m² 이상의 타사광고인 전광류·디지털광고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20%(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

광고물등 빛의 밝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법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시·도 조례로 강화 가능)
- 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허용기준을 준수**
- 법 제18조(과태료)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제외)
- 영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그 밖의 조명기구(광고물등)

벽면 이용 간판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신고 (영 제4조, 제5조)

허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한 변이 10m 이상인 것 - 타사광고 -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전광류 - 디지털광고물 	조명여부 불문 조명·규격불문 규격불문 규격불문
신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 이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 	비조명 또는 백열등·형광등·LED 등의 단순조명(내·외부조명)
배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 미만이고,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이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에 표시 · 4층 이상 최상층에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 	비조명 또는 백열등·형광등·LED 등의 단순조명(내·외부조명)

*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빛의 점멸·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

* **전광류** :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

○ 표시기간(영 제8조) : 3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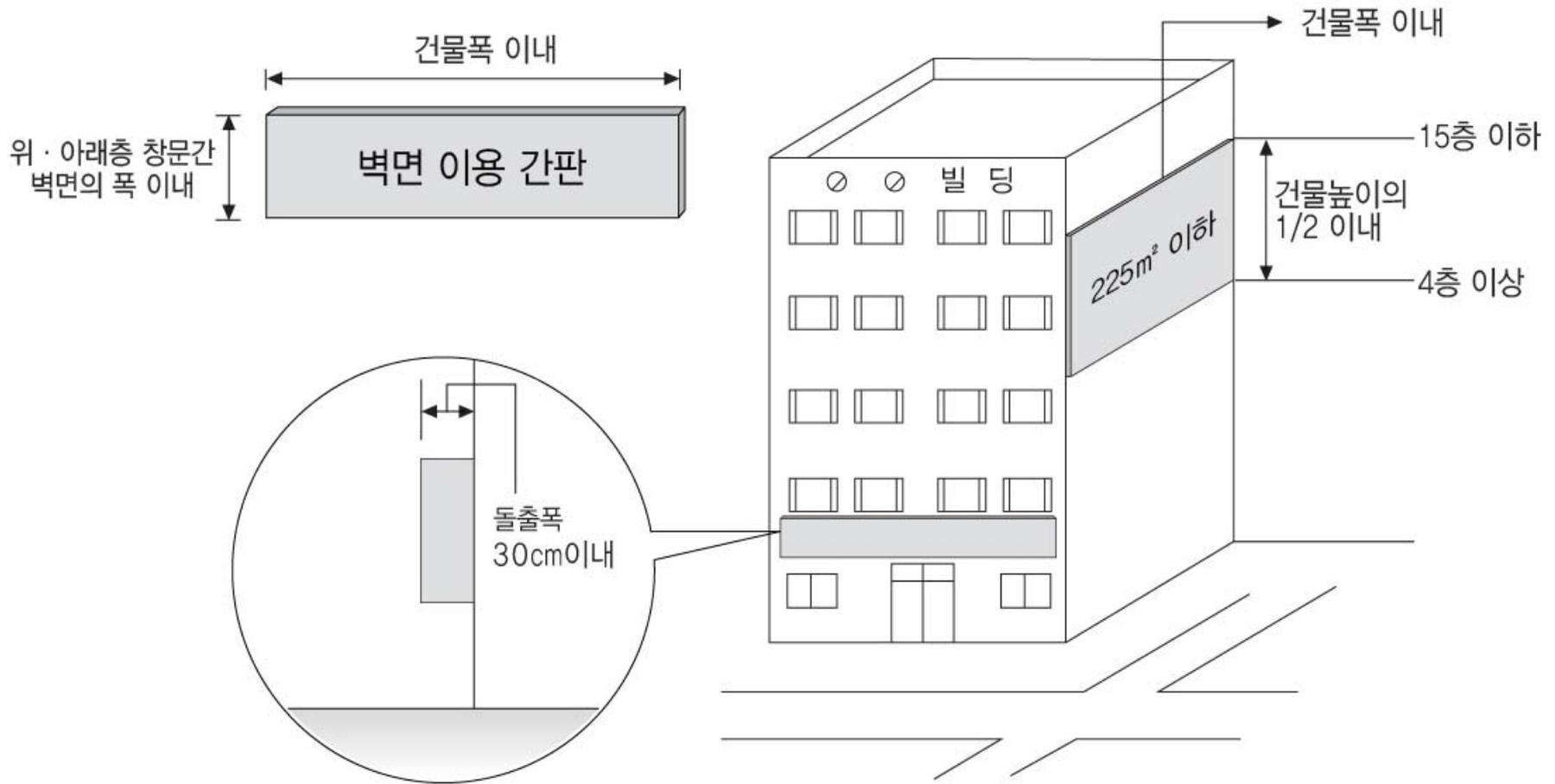
○ 표시방법(시·도 조례 표준안)

표시위치, 수량	규격	표시내용
<p>3층 이하에 업소당 1개(아래는 예외) * 개별 규정에 따른 간판 - 1층 주출입구 양쪽에 1.2m² 이하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물가안정 등 심의로 결정한 경우</p>	<p>가로 :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 위층-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창문이 없는 벽면의 세로는 심의로 정함 돌출폭 : 30cm 이내 ※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p>	<p>자사광고</p>
<p>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 - 3면에 입체형 또는 도로로 각 1개</p>	<p>가로 :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 벽면의 폭 이내 * 세로로 길게 표시는 가로:3m 이내, 세로:건물높이의 1/2 이내 돌출폭 : 30cm 이내 ※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p>	<p>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상징도형</p>
<p>4층 이상 15층 이하 - 3층 이하 간판이 없는 벽면에</p>	<p>면적 225m² 이내 가로 건물폭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 돌출폭 40cm 이내 (도로위 공간점용 없으면 70cm 이내,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80cm 이내)</p>	<p>자사광고 타사광고(상업지역에 옥상 간판이 없는 건물)</p>

주유소·가스충전소 차양면(측면) 주유소·가스충전소 차양면(현수식)	가로 : 차양면 가로폭 이내 세로 : 1면 면적 3.5m ² 이내, 두께 30cm 이내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 가능한 경우 - 4층 이상 15층 이하	면적 225m ²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	자사광고 타사광고(상업지역에 옥상 간판이 없는 건물)
- 연면적 5천m ²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	4m ² 이하, 정지화면만(점멸·동영상 ×)	건물·건물 사용자 안내

- 간판은 출입문, 창문을 막을 수 없음
- 간판은 벽면에 밀착(벽면부터 돌출폭은 간판별 돌출 허용폭 이내)

※ 시·도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



- 건물상단 3면에 입체형 -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상징도형을 표시
- 1 ~ 3층 : 입체형 또는 판류이용 - 타사광고 표시 금지
- 4층 이상 : 상업지역에서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만 타사광고 가능

돌출간판

* 디지털광고물 적용 ❌

○ 정의 (영 제3조)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시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허가·신고 (영 제4조, 제5조)

- 허가 : 신고 대상을 제외한 돌출간판
- 신고 : 의료기관·약국의 표시등(“+”, “약”), 이·미용업소 표시등, 윗부분까지 높이 5m 미만, 한 면의 면적 1m² 미만

○ 표시기간(영 제8조) : 3년 이내

공연간판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신고 (영 제4조, 제5조)

최초 표시는 허가, 나머지는 신고

옥상간판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신고(영 제4조, 제5조) : 모두 허가

지주 이용 간판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기간(영 제8조) : 3년 이내

- 허가·신고 (영 제4조, 제5조)
 - 허가 :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부터 4m 이상
 - 신고 :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부터 4m 미만

○ 표시방법(영 제16조)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부지 안의 지주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상징도형만 표시(주유소·가스충전소 표시등 포함) - 네온류·전광류, 점멸방법 사용 금지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사용 가능 - 그 밖에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부지 밖의 지주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비 6m 이상 도로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 가능 - 전기사용 금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 색상과 혼동 우려 있는 색깔 사용 금지 - 특정한 지역·장소·건물·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만 표시 -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홍보만 표시 - 상업지역·공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 - 제14조를 따름 - 표시면적 12m² 이하 - 수평거리 100m 이상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시·도 조례
표준안

- 전광류, 디지털광고물(건물의 부지 안에서만 가능)
 - 설치지역 : 상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규격 : 면적 1㎡ 이하, 높이 1.5m 이하
 - *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의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중복 설치 ×
- 전자게시대(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 설치·관리 기준
 - 설치지역 :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 지역
 - 수평거리 100m 이상
 - 점멸·동영상 금지(정지화면으로 표시)
 - 그 밖에 세부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전자게시대 운영상 필요한 사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의 (영 제3조)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기간 : 3년 이내,

○ 허가·신고(영 제4조) : 모두 허가 대상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광장의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일기예보탑
- 고속국도 휴게소의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게시판
-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지정게시대
-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 등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기간(영 제8조) : 3년 이내

○ 허가·신고 (영 제4조, 제5조)

- 허가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 시설 이용 광고물(변경, 기간연장 포함)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허가·신고없이 표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기간(영 제8조) : 3년 이내(비행선은 30일 이내)

○ 허가·신고 (영 제4조, 제5조)

- 허가 : 타사광고(사업용자동차, 비행선) - 신고 : 자사광고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은 별도 관리

○ 표시방법(영 제19조) : 사업용, 음식판매 자동차-타사광고, 자가용-자사광고 원칙,

전기사용·발광방식 조명 금지

창문 제외한 각 면 면적의 1/2 이내 옆면, (사업용 : 뒷면, 버스돌출번호판)



창문 이용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 적용

○ 정 의 (영 제3조)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 허가·신고(영 제4조, 제5조)

- 허가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신고 : 규정 없음

○ 표시기간(영 제8조) : 규정 없음

○ 표시방법 (시·도 조례 표준안)

- 천·종이·비닐 등 : 건물 3층 이하에

- 판(디지털디스플레이 포함)·입체형

· 판·입체형 : 건물의 2층 이하에

·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건물 1층에

- 규격 :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면적의 1/4이내(최대 1m² 이하)

※ 시·도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